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93호(號) 1927(昭和 2)년 12월 20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65호(號)

1925(大正 14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(號)에 의하여 1923(大正 12)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 사고(社告) 제104호(號)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, 조선철도주식회사(朝鮮鐵道株式會社)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[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] 중(中) 아래[左]과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2월 20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2조(條) 여객(旅客) 및 하물(荷物)의 취급구간(取扱區間)은 아래[左]와 같이 함.

1 여객(旅客) 및 하물(荷物)

가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) 각(各) 역소(驛所: 간이역[簡易驛]과 함경북도선[咸鏡北部線] 및 청진선[淸津線] 각[各] 역(驛)을 제[除]함과 조철선(朝鐵線) 경동선(慶東線), 경북선(慶北線), 충북선(忠北線), 경남선(慶南線), 황해선(黃海線), 함남선(咸南線), 전남선(全南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 상호간(相互間)

나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함경북도선(咸鏡北部線) 및 청진선(淸津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과 조철선(朝鐵線) 함북(咸北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 상호간(相互間)

2 소하물급(小荷物扱) 폐낭우편물(閉囊郵便物)

가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부산(釜山), 목포(木浦)와 조철선(朝鐵線) 전남선(全南線) 광주역(光州驛)

나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진해(鎭海), 경화(慶和), 창원역(昌原) 역(驛)과 조철선(朝鐵線) 경남선(慶南線) 군북(郡北), 진주(晉州) 역(驛)

다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청진(淸津), 나남(羅南), 부령(富寧), 회령(會寧) 역(驛)과 조철선(朝鐵線) 함북선(咸北線) 신참역(新站驛)

제16조(條) 중(中) 「연락하물(聯絡荷物)」을 「연락 수·소하물(聯絡手小荷物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16조(條)의3 아래[左]에 게시(揭示)한 화물(貨物)은 철도(鐵島)에서 특히 승낙(承諾)한 경우에 한(限)하여 그 운송(運送)을 인수(引受)함으로 함.

1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조철선(朝鐵線) 광궤선(廣軌線) 간(間)

가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협궤선(狹軌線) 발(發) 또는 착(著)의 소하물급(小荷物扱)에 있어서는 1개(箇) 길이[長] 8척(尺), 중량(重量) 1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백(百) 입방척(立方尺)을, 동(同) 차급(車扱)에 있어서는 1(箇) 길이[長] 30척, 중량(重量)

5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4백(百)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

나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광궤선(廣軌線) 발(發) 또는 착(著)의 소화물급(小貨物扱)에 있어서는 1개(箇)의 길이[長] 18척(尺), 중량(重量) 3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3백(百) 입방척(立方尺)을, 동(同) 차급(車扱)에 있어서는 1(箇)의 길이[長] 68척(尺), 중량(重量) 30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천팔백(千八百)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

다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가 정(定)한 급외품(級外品) 제1종(種) 화약류(火藥類) 중(中) 병(丙)에 속(屬)한 것

라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4종(種) 철도차량(鐵道車輛)

마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5종(種) 사체(死體)

바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6종(種) 특종고가품(特種高價品)

사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7종(種) 오염(汚穢)한 물품

아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제25조(條)제2항(項)의 적재 제한(積載制限)을 초과(超過)한 것

자 열차(列車)를 지정(指定)하여 운송(運送)하는 화물(貨物)

차 임시열차(臨時列車)로 운송(運送)하는 화물(貨物)

## 2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, 조철협궤선(朝鐵狹軌線) 간(間)

가 소화물급(小貨物扱): 조선국유철도[朝鮮國有鐵道] 협궤선[狹軌線] 발[發] 또는 착[著] 소화물급[小貨物扱]으로 조철선[朝鐵線] 차급[車扱]으로 연락[聯絡]하는 것을 포함함에 있어서는 1개(箇)의 길이[長] 14척(尺: 조선국유철도[朝鮮國有鐵道] 협궤선[狹軌線] 발[發] 또는 착[著]에 있어서는 8척[尺]), 중량(重量) 1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백(百) 입방척(立方尺)을, 차급(車扱): 조선국유철도[朝鮮國有鐵道] 광궤선[廣軌線] 발[發] 또는 착[著] 소화물급[小貨物扱]으로 조철선[朝鐵線] 차급[車扱]으로 연락[聯絡]하는 것을 포함함에 있어서는 1개(箇)의 길이[長] 30(尺), 중량(重量) 3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3백(百)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

나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가 정(定)한 급외품(級外品) 제1종(種) 화약류(火藥類)

다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4종(種) 철도차량(鐵道車輛)

라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5종(種) 사체(死體)

마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6종(種) 특종고가품(特種高價品)

바 동(同) 급외품(級外品) 제7종(種) 오염(汚穢)한 물품

사 열차(列車)를 지정(指定)하여 운송(運送)하는 화물(貨物)

아 임시열차(臨時列車)로 운송(運送)하는 화물(貨物)

제17조(條)의4 중(中) 단서(但書)를 삭제(削除)함.

제17조(條)의6 연락화물(聯絡貨物)의 할증운임[增運賃] 징수(徵收)에 대하여는 조선철도 화물운임 및 요금 규칙[朝鮮鐵道貨物及料金規則] 제23조(條)제2호(號)는 이것을 적용(適用)하지 아니함.